

# 예 산 총 칙

2014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167,338,891	35,020,167
일반회계	946,420,067	28,392,602
특별회계	220,918,824	6,627,565
공기업특별회계	141,180,340	4,235,410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447,200	43,41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3,208,524	2,196,256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6,524,616	1,995,738
기타특별회계	79,738,484	2,392,155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4,313,998	129,420
수질개선특별회계	10,290,300	308,709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2,898,600	86,958
기반시설특별회계	500,849	15,025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	71,349	2,14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2,458,780	73,763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5,522,576	165,677
주택사업특별회계	73,996	2,220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51,707,953	1,551,239
지하수특별회계	1,900,083	57,002

제 2 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안)"과 같다.

제 3 조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2014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5,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201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17,659,514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승인 이후 교부되는 국도비와 교부세는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